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2017. 11

주식회사 에스비인터랙티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 이라 합니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에스비인터랙티브(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회사의 인터넷전화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은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기본약관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인터넷전화 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 ② 인터넷전화번호 :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의거하여 부여 받은 070 번호
- ③ G/W(게이트웨이) : 이용자의 일반전화기와 연동하여 인터넷망을 통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
- ④ 사설전화교환기(IP-PBX) : 기업구내·외전화를 인터넷전용회선 기반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
- ⑤ 유무선 IP폰 : 인터넷회선에 추가 장비없이 바로 연결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단말 장치
- ⑥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⑦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⑧ 발신번호 :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
- ⑨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 수신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정한 전기통신번호 규격 이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한 특수번호 또는 다른 전화번호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의미
- ⑩ 발신번호 변작 :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여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발신번호를 표시
- ⑪ 변작번호 차단목록 : 제3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 또는 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
- ⑫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사 가입자에게 가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
- ⑬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시스템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 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

제 2 장 계약의 성립과 이용

제 4 조 [계약의 성립]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1>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 청약하여야 합니다.

- ① 회사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하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4.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 정보사의 신용 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 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3조 제3항 제10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별첨 #1>과 같이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 청약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청약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으로 가입동의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청약에 대하여 승낙 시 다음 사항을 이용고객에게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제6호에 대해서는 승낙 전 사전 고지합니다.
 1. 전화번호
 2. 서비스 제공일(개통일)
 3. 요금에 관한 사항
 4.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6.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
 7.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신청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합니다.

제 5 조 [전화번호 등의 부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070전화번호는 회사의 승낙순서에 따라 복수 이상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고객이 선택하게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개통]

서비스 개통은 회사가 이용고객의 서비스 청약을 검토하고 설치공사가 끝난 후 이용고객에게 개통을 통보하였거나,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시작한 때로 합니다.

제 7 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용고객이 서비스 종류별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이용권의 승계]

- ① 전화의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발신 통화량이 없는 경우 승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가족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법인 (개인사업자, 관청,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또는 합병 등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 변경의 경우
 4. 개인과 법인 (개인사업자, 관청, 단체 포함) 상호간에는 법인 또는 개인명으로 승계, 승계한 후 승계 전 명의로 다시 승계,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 ② 전화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와 다음 각 호에 의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 1가지
 2.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1가지
 3.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도 계약서 사본, 회사 합병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 1가지
 4.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중 1가지
- ③ 제1항의 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 불가 종류]

- ① 인터넷전화의 이동성으로 인해 가입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파악이 곤란하므로 긴급통신(112, 119 등) 제공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단말장치의 이용]

- ① 이용고객은 인터넷전화 이용에 필요한 단말장치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당 단말장치를 이용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고객이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규격 등은 회사 사장이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이용고객은 계약해지, 수용구역을 달리하는 전출, 1개월을 경과하는 일시 이용중단의 경우에는 임차한 단말장치 해지일, 전출일, 일시 이용중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고객이 회사로부터 임차한 단말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이용의 정지]

-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전화 불법호 및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3.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5.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설치 및 개통을 3개월 내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특정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 특정국가의 다수의 번호로 국제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9. 해외의 특정번호로 국제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 상기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로 추정하는 경우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시
 1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13.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및 제20조(벌칙)
 - 나.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1항
 -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항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5.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 번호 차단 목록에 포함된 경우
 16.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17. 사설전화교환기 이용자의 발신번호 임의 변작이 확인된 경우
 18. 이용고객이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전화사기 이용으로 확인된 경우
 19.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20.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21.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② 이용고객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고객이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⑥ 이용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동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 정지에 있어 회사의 국제전화 서비스로 발신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합니다.
- ⑧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 ⑨ 제1항 제13호에 따라 이용정지가 된 경우 이용정지 요청기관에서 이용정지의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⑩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된 이용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 ⑪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12 조 [이용의 휴지]

-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 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한 휴지기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제 13 조 [일시 이용중단]

- ① 이용고객의 사정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30일(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중단 회수는 1년에 3회 이내로 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해외유학, 군입대로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중단기간을 해외유학은 최대 1년, 군입대는 최대 2년으로 합니다.

제 14 조 [계약의 해제, 해지]

- ①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전화, 팩스, E-mail,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시 문자메시지, 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고지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과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또는 계약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3.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그 사유를 1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는 경우
 4. 일시 이용중단 기간의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부활하지 않은 경우
 5. 당해 연도에 3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6.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한 경우
 7. 제16조[이용고객의 의무]에 관한 조항, 기타 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9.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0.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1.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2.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13. 제10조[이용의 정지]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5. 이용정지된 이용자가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장기계약할인서비스에 의하여 할인된 금액)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 ⑤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경품 제공 관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청약 시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 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리하는 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 ⑥ 장기계약할인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요금 할인을 받은 이용고객이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할인 받은 이용요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⑦ 이용고객이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3항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제3항과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⑨ 제3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유로 고지 할 수 없는 경우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SMS발송 또는 TM실시
 2. 내용증명 발송
- ⑩ 제9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이용자가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의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된 경우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권한

제 15 조 [회사의 의무 및 권한]

-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개통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③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 ④ 회사는 제14조 제3항 제10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이 해지된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성별, 생년월일(또는 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 ⑥ 회사는 이용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 대상자와 제14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자의 회선설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회선설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스팸 발송 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음성통화에 대해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 ⑨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⑩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⑪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를 회사에서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해당 회선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정지되는 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⑫ 회사는 이의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⑬ 회사는 제11조 제10항에 따라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15일 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⑭ 회사는 사설전화교환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송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⑮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 메시지 안내, 국제전화 안내 문구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16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보관·관리 할 수 있습니다.
- 17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8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1.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2.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 3. 국제전화의 경우 구별 가능한 메시지 송출

제 16 조 [이용고객의 의무]

- ① 이용고객은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3.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고객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②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③ 이용고객은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 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 ⑤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⑦ 이용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⑧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⑨ 본 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⑩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⑪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⑫ 이용자는 동 약관 제15조 제15항에서 제시된 국제문자 알림 및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⑬ 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가입자는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해서 전화번호 임의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1.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8자리 이상의 패스워드 설정 및 6개월에 1회 이상 패스워드 변경
 2.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을 외부 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3.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 패치
 4. 기타 암호화, 방화벽 등 보안에 필요한 조치
 다만,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사설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요 금

제 17 조 [요금의 종류]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기본료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2. 통화료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전화통화 이용료
 3. 부가서비스료 :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부가서비스 이용료
 4. 설치비 : 가입자 단말에 대한 신규설치 또는 설치장소 변경시 납입하는 요금
 5. 기기사용료 : 회사로부터 GW 등 가입자 단말을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 ②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첨 #2>와 같습니다.

제 18 조 [요금의 산정]

- ① 일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 시각 또는 종료 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 ② 청구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의 계산결과 끝수가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 ③ 서비스 이용시간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발신인 혹은 수신인이 통신 이용의 종료신호를 한 때까지로 하며, 서비스의 이용시간 중에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신인 측의 전화, PC 등에 접속되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 ④ 고객 통화 정보 데이터를 보관할 시한은 최대 2년으로 하며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시한이전이라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요금의 반환]

- ① 회사는 이용자의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하거나 적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 20 조 [이의신청 및 체납요금의 청구]

-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 ③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요금납입 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여 요금의 납입을 최고합니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경우 최초납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납입되지 않은 요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가산금"이라 합니다.)을 청구합니다.

제 5 장 SPAM 관리

제 21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동보 전송의 제한]

- ① 이용자는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를 밝힌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이용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③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등록하는 조치
-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 월 5,000건 이상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 월 5,0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메시지 발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⑤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송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동보 전송의 위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제2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동보 전송의 제한)및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며, 위반 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제 23 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자가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서비스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망 관련 공사로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한 이후 발생한 경우
3. 정전 장애로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제 7 장 번호이동성

제 24 조 [신청]

- ① 이 약관에 의하여 인터넷전화를 신규 가입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는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내전화사업자 또는 인터넷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번호이동성"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번호이동성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여 설치·이용·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
 2. 이용자가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이용하는 인터넷전화
- ②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번호이동 개통 완료 후 번호이동 등록 수수료를 변경 후 사업자인 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번호이동 등록 수수료를 회사의 정기요금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하거나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등록 수수료는 이용자와 별도 계약을 맺어 회사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재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에게 대납에 따른 계약 내용 이행 의무를 통지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신 납부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④ 번호이동 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번호이동관리센터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 착신과금 서비스 번호이동성 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 ⑤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변경 후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5 조 [변경 및 등록]

- ①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번호이동성 이용자가 최근 번호이동 개통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번호이동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③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중립기관인 번호이동성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④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번호이동관리센터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 착신과금 서비스 번호이동성 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 ⑤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26 조 [이용권의 양도·승계]

- ①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 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 ② 제 1 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제 4 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 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 가지
 2.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 가지
 3.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 가지
 4. 제 8 조 제 1 항 제 4 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5.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 27 조 [통화권 준수]

- ① 시내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지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 변경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 후 1개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개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제2항의 번호변경서비스 수수료의 30배의 범위 내로 합니다.

제 28 조 [긴급통신, 위치정보 제공 등]

- ① 회사는 이용자가 119 구조 신고시 인접 119긴급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도록 조치하고 긴급구조를 위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단 이용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각 번호별 주소정보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주소 인접 119긴급구조 기관에 전화가 연결되고 119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② 인터넷전화 설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고객센터(1577-0770)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 신고 시 119 등 긴급구조기관이 변경 전 주소지로 출동하게 되어 고객님의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주소정보는 이용자가 회사에 신청하거나 주소정보를 변경 신청한 각 번호별 인터넷전화 단말기 설치 장소 주소에 한합니다.

제 29 조 [위치정보 변경적용 시점]

- ①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한 경우 및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한 주소지 정보는 통보일 익일 09:00부터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제공시점 이전에는 번호이동 신청전 및 변경전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이용자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 8 장 기타

제 30 조 [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 ① 회사는 고객의 인터넷전화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36개월을 초과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제 31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SB 인터랙티브 인터넷전화 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추가 해지 변경 기타 ()

1. 고객 정보

신청자	상호(성명)		대표자명		사업자(주민)번호	
	주소	()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2. 납부 정보

납부방식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input type="checkbox"/> 지로납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요금납부책임자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번호	
		요금청구주소			
		연락전화		신청자와의관계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업자(주민)번호	
신용카드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회원명		카드유효기간		

* 예금주 및 카드회원명은 요금납부책임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본인(예금주 및 카드회원)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해 별도의 통지없이 상기 본인의 지정계좌(카드번호)에서 지정된 출금(결제)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납부 신청인 : _____ (서명/인)

3. 상품/ 070 번호신청

상품	<input type="checkbox"/> SXII <input type="checkbox"/> 070Basic <input type="checkbox"/> IP-Centrex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요금제	<input type="checkbox"/> Basic <input type="checkbox"/> Domestic <input type="checkbox"/> L/E <input type="checkbox"/> 기타 ()
070 번호 / 0263 번호	총 ()개
장비모델	G/W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판매 ()대 <input type="checkbox"/> 임대 ()대
	IP Phon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판매 ()대 <input type="checkbox"/> 임대 ()대

4. 장비 임대

약정기간	<input type="checkbox"/> 무약정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2년 <input type="checkbox"/> 기타 ()
포트수	<input type="checkbox"/> 포트 당 <input type="checkbox"/> 월 만원 <input type="checkbox"/> 총 임대료 <input type="checkbox"/> 월 만원
장비 Serial No.	장비 모델명 <input type="checkbox"/>

5. 신용 정보 활용 동의서 및 주소지 변경 사용자 고지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상기 신용정보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상기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사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인터넷전화 설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고객센터(1577-077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신고시 119 등 긴급구조기관이 변경 전 주소지로 출동하게 되어 고객님의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첨부 서류 : 사업등록증(신분증) 사본 1부, 계좌이체시 통장사본 1부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첨 #2> 호유형별 청구 요금

호유형	지역명	도수(초수당)	요금 (원, VAT 별도)
070 기본료		번호당	2,000
국내 Mobile		10 초당	11
국내 PSTN		3 분당	35
국제	Australia	1 분당	49
국제	Australia - Mobile	1 분당	299
국제	Austria	1 분당	49
국제	Austria - Mobile	1 분당	399
국제	Canada	1 분당	49
국제	China	1 분당	49
국제	China - Mobile	1 분당	49
국제	Denmark	1 분당	49
국제	Denmark - Mobile	1 분당	399
국제	France	1 분당	49
국제	France - Mobile	1 분당	309
국제	Germany	1 분당	49
국제	Germany - Mobile	1 분당	289
국제	Greece	1 분당	49
국제	Greece - Mobile	1 분당	399
국제	Hong Kong	1 분당	49
국제	Japan	1 분당	49
국제	Japan - Mobile	1 분당	239
국제	New Zealand	1 분당	49
국제	New Zealand - Mobile	1 분당	299
국제	Norway	1 분당	49
국제	Norway - Mobile	1 분당	399
국제	Portugal	1 분당	49
국제	Portugal - Mobile	1 분당	399
국제	Singapore	1 분당	49
국제	Spain	1 분당	49
국제	Spain - Mobile	1 분당	339
국제	Sweden	1 분당	49
국제	Sweden - Mobile	1 분당	339
국제	Switzerland	1 분당	49
국제	Switzerland - Mobile	1 분당	339
국제	United Kingdom	1 분당	49
국제	United Kingdom - Mobile	1 분당	309
국제	United States	1 분당	49
국제	Afghanistan	1 분당	1,380
국제	Alaska	1 분당	160
국제	Albania	1 분당	880
국제	Algeria	1 분당	880
국제	American Samoa	1 분당	780
국제	Andorra	1 분당	680
국제	Angola	1 분당	880

호유형	지역명	도수(초수당)	요금 (원, VAT 별도)
국제	Anguilla	1 분당	980
국제	Antarctica	1 분당	880
국제	Antigua & Barbuda	1 분당	880
국제	Argentina	1 분당	780
국제	Armenia	1 분당	880
국제	Aruba	1 분당	880
국제	Ascension Is.	1 분당	1,180
국제	Azerbaijan	1 분당	880
국제	Azores Is.	1 분당	580
국제	Bahama	1 분당	780
국제	Bahrain	1 분당	980
국제	Balearic Is.	1 분당	1,280
국제	Bangladesh	1 분당	980
국제	Bangladesh - Mobile	1 분당	980
국제	Barbados	1 분당	980
국제	Belarus	1 분당	880
국제	Belgium	1 분당	180
국제	Belgium - Mobile	1 분당	580
국제	Belize	1 분당	980
국제	Benin	1 분당	880
국제	Bermuda	1 분당	680
국제	Bhutan	1 분당	980
국제	Bolivia	1 분당	980
국제	Bophuthatswana	1 분당	980
국제	Bosnia	1 분당	880
국제	Botswana	1 분당	880
국제	Brazil	1 분당	580
국제	Brazil - Mobile	1 분당	580
국제	Brunei	1 분당	780
국제	Bulgaria	1 분당	880
국제	Burkina Faso	1 분당	980
국제	Burundi	1 분당	980
국제	Cambodia	1 분당	980
국제	Cameroon	1 분당	980
국제	Canary Is.	1 분당	980
국제	Cape Verde	1 분당	880
국제	Cayman Island	1 분당	780
국제	Central African Rep.	1 분당	1,080
국제	Ceuta	1 분당	1,380
국제	Chad Rep.	1 분당	1,080
국제	Channel Is.	1 분당	1,380
국제	Chile	1 분당	680
국제	Chile - Mobile	1 분당	780
국제	Christmas Is & Cocos Is.	1 분당	880
국제	Colombia	1 분당	680
국제	Comoros	1 분당	980

호유형	지역명	도수(초수당)	요금 (원, VAT 별도)
국제	CONGO R.	1 분당	880
국제	Cook Is.	1 분당	1,180
국제	Costa Rica	1 분당	780
국제	Croatia	1 분당	880
국제	Cuba	1 분당	1,180
국제	Cyprus	1 분당	780
국제	Czech Rep.	1 분당	780
국제	Diego Garcia	1 분당	1,080
국제	Djibouti Rep.	1 분당	1,180
국제	Dominica	1 분당	880
국제	Dominican Rep.	1 분당	880
국제	East Timor	1 분당	380
국제	Ecuador	1 분당	880
국제	Egypt	1 분당	880
국제	El Salvador	1 분당	680
국제	Equatorial Guinea Rep.	1 분당	980
국제	Eritrea	1 분당	1,380
국제	Estonia	1 분당	780
국제	Ethiopia	1 분당	1,380
국제	Falkland Is.	1 분당	880
국제	Faroe Is.	1 분당	780
국제	Fiji Is.	1 분당	1,180
국제	Finland	1 분당	580
국제	Finland - Mobile	1 분당	680
국제	French Guiana	1 분당	880
국제	Gabon Rep.	1 분당	880
국제	Gambia	1 분당	880
국제	Georgia	1 분당	880
국제	Ghana	1 분당	980
국제	Gibralta	1 분당	780
국제	Greenland	1 분당	780
국제	Grenada	1 분당	980
국제	Guadeloupe	1 분당	880
국제	Guam	1 분당	380
국제	Guatemala	1 분당	680
국제	Guinea Bissau	1 분당	980
국제	Guinea Rep.	1 분당	880
국제	Guyana	1 분당	1,280
국제	Haiti	1 분당	880
국제	Hawaii	1 분당	160
국제	Honduras	1 분당	880
국제	Hungary	1 분당	780
국제	Hungary - Mobile	1 분당	780
국제	Iceland	1 분당	680
국제	India	1 분당	980
국제	Indonesia	1 분당	380

호유형	지역명	도수(초수당)	요금 (원, VAT 별도)
국제	Indonesia - Mobile	1 분당	580
국제	Iran	1 분당	1,080
국제	Iraq	1 분당	1,380
국제	Ireland	1 분당	180
국제	Ireland - Mobile	1 분당	580
국제	Israel	1 분당	780
국제	Italy	1 분당	160
국제	Italy - Mobile	1 분당	580
국제	Ivory Coast	1 분당	1,180
국제	Jamaica	1 분당	880
국제	Jordan	1 분당	1,080
국제	Kazakhstan	1 분당	880
국제	Kenya	1 분당	880
국제	Kiribati	1 분당	1,180
국제	Kuwait	1 분당	880
국제	Kuwait - Mobile	1 분당	1,080
국제	Kyrgyzstan	1 분당	880
국제	Laos	1 분당	880
국제	Latvia	1 분당	880
국제	Lebanon	1 분당	980
국제	Lesotho	1 분당	980
국제	Liberia	1 분당	880
국제	Libya	1 분당	880
국제	Liechtenstein	1 분당	580
국제	Lithuania	1 분당	880
국제	Luxembourg	1 분당	580
국제	Luxembourg - Mobile	1 분당	680
국제	Macau	1 분당	780
국제	Macedonia	1 분당	880
국제	Madagascar	1 분당	1,080
국제	Malawi	1 분당	880
국제	Malaysia	1 분당	440
국제	Maldives Rep.	1 분당	1,080
국제	Mali Rep.	1 분당	1,180
국제	Malta Rep.	1 분당	680
국제	Marshall Is.	1 분당	1,080
국제	Martinique	1 분당	880
국제	Mauritania	1 분당	980
국제	Mauritius	1 분당	1,180
국제	Mayottes Is.	1 분당	880
국제	Mexico	1 분당	580
국제	Micronesia	1 분당	1,080
국제	Moldova	1 분당	880
국제	Monaco	1 분당	580
국제	Mongolia Rep.	1 분당	780
국제	Montserrat	1 분당	880

호유형	지역명	도수(초수당)	요금 (원, VAT 별도)
국제	Morocco	1 분당	980
국제	Mozambique	1 분당	980
국제	Myanmar(Burma)	1 분당	980
국제	Namibia	1 분당	880
국제	Nauru	1 분당	1,180
국제	Nepal	1 분당	980
국제	Netherlands	1 분당	50
국제	Netherlands - Mobile	1 분당	339
국제	Netherlands Antiles	1 분당	980
국제	New Caledonia	1 분당	980
국제	Nicaragua	1 분당	880
국제	Niger Rep.	1 분당	980
국제	Nigeria Rep.	1 분당	297
국제	Niue	1 분당	1,180
국제	Norfolk Is.	1 분당	1,080
국제	Oman	1 분당	1,080
국제	Pakistan	1 분당	980
국제	Pakistan - Mobile	1 분당	980
국제	Palau Rep.	1 분당	880
국제	Palestine	1 분당	780
국제	Panama Rep.	1 분당	680
국제	Papua New Guinea	1 분당	980
국제	Paraguay	1 분당	880
국제	Peru	1 분당	880
국제	Philippines	1 분당	440
국제	Philippines - Mobile	1 분당	440
국제	Poland	1 분당	680
국제	Poland - Mobile	1 분당	680
국제	Puerto Rico	1 분당	680
국제	Qatar	1 분당	1,080
국제	Reunion Is.	1 분당	880
국제	Romania	1 분당	680
국제	Russia	1 분당	580
국제	Rwanda	1 분당	1,180
국제	Saipan	1 분당	380
국제	San Marino	1 분당	680
국제	Sao Tome Principe	1 분당	1,380
국제	Saudi Arabia	1 분당	980
국제	Senegal Rep.	1 분당	1,080
국제	Serbia	1 분당	880
국제	Seychelles Is.	1 분당	1,080
국제	Sierra Leone	1 분당	1,280
국제	Slovakia	1 분당	780
국제	Slovenia	1 분당	680
국제	Solomon Is.	1 분당	1,180
국제	Somalia Rep.	1 분당	1,180

호유형	지역명	도수(초수당)	요금 (원, VAT 별도)
국제	South Africa	1 분당	880
국제	Sri Lanka	1 분당	880
국제	St. Helena	1 분당	1,080
국제	St. Kitts & Nevis	1 분당	880
국제	St. Lusia	1 분당	880
국제	St. Pierre & Miquelon	1 분당	780
국제	St. Vincent	1 분당	880
국제	Sudan	1 분당	980
국제	Surinam Rep.	1 분당	1,180
국제	Swaziland	1 분당	880
국제	Syria	1 분당	1,080
국제	Tahiti	1 분당	1,180
국제	Taiwan	1 분당	240
국제	Taiwan - Mobile	1 분당	440
국제	Tajikistan	1 분당	880
국제	Tanzania	1 분당	980
국제	Thailand	1 분당	440
국제	Togo Rep.	1 분당	1,280
국제	Tonga Is.	1 분당	1,180
국제	Trinidad&Tobogo	1 분당	880
국제	Tunisia	1 분당	880
국제	Turkey	1 분당	780
국제	Turkmenistan	1 분당	880
국제	Turks & Caicos Is	1 분당	880
국제	Tuvalu Is.	1 분당	1,180
국제	Uganda	1 분당	880
국제	Ukraine	1 분당	880
국제	United Arab Emirates	1 분당	880
국제	Uruguay	1 분당	880
국제	Uzberkistan	1 분당	680
국제	Vanuatu Rep.	1 분당	1,180
국제	Vatican	1 분당	680
국제	Venezuela	1 분당	880
국제	Vietnam	1 분당	1,180
국제	Virgin Is(U.K.)	1 분당	880
국제	Virgin Is(U.S.A)	1 분당	680
국제	Wallis & Futuna	1 분당	980
국제	Western Samoa	1 분당	1,080
국제	Yemen Rep.	1 분당	1,280
국제	Zaire	1 분당	1,080
국제	Zambia	1 분당	880
국제	Zimbabwe	1 분당	880